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355
----------	-------

발의연월일 : 2024. 1. 24.

발 의 자 : 송석준 · 성일중 · 이종배
윤창현 · 김영식 · 태영호
김학용 · 조정태 · 정우택
전주혜 의원(10인)

제안이유

병역특례를 받는 「체육 특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아시안게임에서 1위로 입상해야함. 하지만 「체육 분야 우수자」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도쿄 올림픽의 남자 높이뛰기 선수인 우상혁 선수처럼 한국신기록을 수립하거나 국위 선양의 현저한 공이 있음에도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27세까지 입영이 연기되는 것이 전부임.

즉, 체육 특기자로 뽑혀 예술·체육요원이 되면 자유롭게 영리활동 등 사회생활을 하지만 체육 분야 우수자는 병역의무를 그대로 짊어져야하기 때문에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대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하다가 시기를 놓쳐 제대할 즈음이면 은퇴를 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입상하지 못했더라도 탁월한 능력을 가져 국위를 선양한 체육 분야 우수자들에게 입영연령제한을 현행

30세에서 병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32세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육 분야의 인재들이 한창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에 입영함으로써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체육 분야 우수자의 경우 병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2세의 범위 내에서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 제4항 신설).
- 나. 체육 분야 우수자라도 병역이나 입영을 기피하거나 면탈 또는 고의로 병역의무를 연기하려는 사람은 병역의무이행일 연기에서 제외함(안 제68조제2호 개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60조제2항제3호의 체육 분야 우수자의 경우에는 병력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2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6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60조제1항제1호·제2호, 제60조제2항 및 제61조제4항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소집 및 의무이행일의 연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2. <u>제6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및 징집 또는 소집의 연기</u> 3.·4. (생략)	2. <u>제60조제1항제1호·제2호, 제60조제2항 및 제61조제4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소집 및 의무이행일의 연기</u> 3.·4. (현행과 같음)
---	--